

#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(안)

의안 번호	2015-48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10. .  
제 출 자 : 강 서 구 청 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천재지변, 지진, 풍수해, 벼락, 화재, 전화(戰禍), 도괴(倒壞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,
- 나.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에 대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을 연장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결을 받아 감면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감면대상자

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그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  
(다만,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)

### 나. 감면사항

위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15년도 재산세를 면제한다.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##### ○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제4항

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“지방세 감면”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다만,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.

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·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##### ○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(지방세 감면 규모 등) 제4항

④ 법 제4조 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”란 지진, 풍수해, 벼락, 화재, 전화(戰禍), 도괴(倒壞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○ 희생자 및 감면 대상자

이름	생년월일	관계	물건지	비고
지혜○	1972년생	희생자		
최정○	1946년생	모	내발산동 759번지 6**-13**	마포구 거주

○ 지방세 감면 내역

(단위: 원)

구분	계	구세	시세			
		재산세	특별시분 재산세	재산세 도시지역분	지역지원 시설세	지방교육세
부과액	600,880	131,250	131,250	247,800	38,080	52,500

○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
○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

○ 구세 감면 규모: 총 131,250원